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가합60956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규
변 론 종 결 2021. 5. 26.
판 결 선 고 2021. 7. 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85,415,437원 및 그 중 681,010,067원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2021. 2. 21.까지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84,462,602원 및 그 중 481,158,422원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2021. 1. 12.까지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15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9. 8.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77,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9. 8. 12.부터 2020. 8. 11.까지로 정하여 주채무인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채무를 원고가 신용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보증금액 477,000,000원(대출예정금액 530,000,000원, 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20. 8. 11.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으며, 피고 회사는 2019. 8. 13.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으로부터 여신기간 만료일을 2020. 8. 11.로 정하여 530,000,000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9. 8.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98,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9. 8. 12.부터 2022. 8. 11.까지로 정하여 주채무인 피고 회사의 E에 대한 대출채무를 원고가 신용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보증금액 198,000,000원(대출예정금액 220,000,000원, 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22. 8. 11.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으며, 피고 회사는 2019. 8. 13.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으로부터 여신기간 만료일을 2022. 8. 11.로 정하여 220,000,000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받았다.

3) 이 사건 제1, 2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개별보증용)

제2조(신용보증방법)

③ 원고는 본인(피고 회사, 이하 같다)이 부담하는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개별보증 또는 근보증 방법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으며,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발급된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보증책임이 소멸될 때까지 이 약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조(보증료 등 납부)

① 본인은 원고가 제2조 제1항의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 보증료율(최고적용률연율%) 계산방법 내는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이 주채무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

본인은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기로 합니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4. F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9.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원고가 신용보증부실사유발생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13. 위 각 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가 채권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전통지 없이 본인과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9조(보증채무이행 및 통지)

①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고는 법령 및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의 “원고가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말하며, 율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6조(연대보증인)

① 연대보증인은 제10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2020. 7. 1.경 기업은행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을 연체하여 F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었다.

2) E은 2020. 8.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대출의 여신기간 만료일(2020. 8. 11.)이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 제1대출 원금 530,000,000원의 연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를 청구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8. 13.경 이 사건 제1, 2약정에 관하여 부실처리를 하였다.

3) 원고는 2020. 11. 27.경 E에게 ① 이 사건 제1대출 원금 중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47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8. 3.부터의 이자 4,158,422원 합계 481,158,422원, ② 이 사건 제2대출 원금 중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19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8. 3.부터의 이자 1,851,645원 합계 199,851,6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 등

1) 피고 B은 2019. 12. 12.경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8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2. 19. 피고 C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피고 C는 2020. 6. 25.경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13. 피고 D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제1, 2약정 제10조는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 피고 B은 즉시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제1호)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제2호),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제4호), 미납한 보증료, 위약금(제5호)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② 제3조 제1항은 피고 회사는 원고가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 보증료를 계산방법 내는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납부하기로 정하였으며, ③ 제3조 제3항은 피고 회사가 주채무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정한 사실, ④ 원고가 2020. 11. 27.경 E에게 이 사건 제1, 2대출 대위변제금으로 합계 681,010,067원(= 481,158,422원 + 199,851,645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인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약정에 관하여 2019. 8. 12.부터 2020. 8. 11.까지의 보증료만 납부하였고, 2020. 8. 12.자 보증료는 미납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 사건 제2약정의 2020. 8. 12. 보증료율은 1.6%인 사실, 이 사건 제1, 2약정 제3조 제3항에 따른 위약금 요율은 1.9%인 사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제1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피고 C, D에 대한 손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채권보전비용으로 647,36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약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① 이 사건 제1, 2대출 대위변제금 합계 681,010,067원, ② 이 사건 제2약정의 2020. 8. 12.자 미납한 보증료 8,670원(= 198,000,000원 × 1.6% × 1일/365, 10원 미만 버림), ③ 이 사건 제1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2,656,820원(= 477,000,000원 × 1.9% × 107일1) / 365, 10원 미만 버림), ④ 이 사건 제2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1,092,520원(= 198,000,000원 × 1.9% × 106일2) / 365, 10원 미만 버림), ⑤ 채권보전비용 647,360원 합계 685,415,437원(= 681,010,067원 + 8,670원 + 2,656,820원 + 1,092,520원 + 647,360원)을, 이 사건 제1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① 이 사건 제1대출 대위변제금 481,158,422원, ② 이 사건 제1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2,656,820원, ③ 채권보전비용 647,360원 합계 484,462,602원(= 481,158,422원 + 2,656,820원 + 647,36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B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약정의 보증기간은 2020. 8. 11. 만료되었고, 2020. 7. 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제2약정은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2약정의 2020. 8. 12.자 미납한 보증료 8,6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2약정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2020. 8. 11.이 아닌 2022. 8. 11.이고, 원고는 2020. 8. 13.경 이 사건 제2약정에 의하여 부실처리를 하였으며, 이 사건 제2약정 제2조 제3항은 피고 회사는 발급된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보증책임이 소멸될 때까지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약정의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자 위 부실처리일 전날인 2020. 8. 12.자 미납한 보증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B은, 자신은 이 사건 제1약정의 연대보증인일 뿐이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약정에 기한 채무는 연대보증하지 않았으므로, 채권보전비용 647,360원 중 이 사건 제1약정에

관하여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제1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피고 C,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비용으로 647,36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약정에 관하여 지출된 채권보전비용 647,360원 전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685,415,437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1, 2대출 대위변제금 합계 681,010,06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2021. 2. 21.까지 약정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84,462,602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1대출 대위변제금 481,158,42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21. 1. 12.까지 약정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9. 12. 12.경 피고 B에 대한 사전 사후구상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제1약정에 기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2020. 7. 1.경 F에 피고 회사의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등으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사전 사후구상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곧 현실화되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전 사후구상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피고 B은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 회사의 감사인 피고 C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이후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D에게 다시 매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350,000,000원에서 사해행위 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196,000,000원을 공제한 15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C와 전득자인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화성시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제1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전 사후구상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전 사후구상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2대출금 이자를 2020. 8. 3.경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6개월 이상이 지난 2020. 7. 1.경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하여 F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20. 8. 13.경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이 사건 제1, 2약정에 관하여 부실처리가 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다시 약 3개월이 지난 2020. 11. 27.경 이 사건 제1, 2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② E은 2020. 8.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대출 원금 연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면서 피고 회사의 현황에 대하여 “정상 운영 중이나, 유동성 위기 상태임.”이라고 기재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2020. 8. 12.경에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

③ 피고 회사는 2020. 6.경 부과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911,280원을 체납하기 이전에는 피고 회사에 부과된 세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④ 피고 회사는 G로부터 임차한 화성시 H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분 차임 합계 26,4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 × 8개월)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9년 12월까지의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차임 연체 무렵에 위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의 반환채권이 있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진표, 판사 김주현, 판사 구하경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화성시 I에 있는 J아파트

K동

[도로명주소] 화성시 L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1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화성시 I 대 234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M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84.9581㎡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23447분의 51.115. 끝.

1) 주채무 이행기일 및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2020. 8. 12.부터 대위변제 전날인 2020. 11. 26.까지 107일.

2) 주채무 이행기일 이후로서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2020. 8. 13.부터 대위변제 전날인 2020. 11. 26.까지 106일.